예 산 총 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18,269,894	12,548,097
일반회계		402,468,535	12,074,056
특별회계		15,801,359	474,041
	기타특별회계	15,801,359	474,04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01,547	21,046
	주차장 특별회계	8,192,735	245,78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967,350	29,021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363,864	10,916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50,600	10,518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	5,225,263	156,758

-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 제 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8,114,738천원(일반 4,024,685천원, 재해·재난목적 14,090,053천원)으로 한다.
- 제 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제 9 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특별교부세(금), 특정목적기부금 등 이전재원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 예산서 재원 표기

- [국] 국고보조금, [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 기 금
- [특] 특별교부세, [별] 특별조정교부금, [시] 시비보조금, [구] 자체재원